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55
----------	------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창수의원 외 9명
- 나. 제안일 : 2017년 4월 6일
- 다. 회부일 : 2017년 4월 7일
- 라. 상정일 :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4월 2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창수 의원)

가. 제안이유

- 경쟁을 나타내는 ‘인센티브’대신 상생을 의미하는 ‘공동협력’으로 조례명(사업명) 및 본문 내용을 변경, 외래어를 순화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사업명 ‘인센티브’를 ‘공동협력’으로 변경
- 2) 자치구와 협력 강화를 위해 용어 순화
 - ‘선의의 경쟁’을 ‘협력’으로 변경
 - ‘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우려되는’ 을 ‘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개정안은 1999년부터 시행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의 명칭이 2016년부터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본문에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 시·자치구 직원 대상 명칭 공모(15.12.)를 통해 명칭 변경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매년 시장방침에 따라 편의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조례(「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과 자치구 기피업무 및 시정 역점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공동협력사업 개요>

○ 연 혁					
· 2000년	자치행정과 시행(기 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				
· 2009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제정				
· 2016년	공동협력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목 적					
· 시정 주요 역점사업 및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동협력사업 개수 및 예산 총액 >					
연도(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수(개)	17	14	12	10	8
예산액(백만원)	8,000	7,800	8,000	8,000	8,000

가. ‘인센티브 사업’ 을 ‘공동협력 사업’으로 변경 (조례 제명, 안 제1조~안제7조)

- 개정안은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인센티브 사업’을 ‘공동협력 사업’으로 변경하여 조례명과 본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인센티브 사업’을 ‘공동협력 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자치구와 협력이 필요한 핵심 사업을 상호협력하에 수행하도록 하여 ‘자치

구 길들이기' 사업¹⁾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공동으로 달성하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자치구와 협력 강화를 위해 용어 순화 등 (안제1조, 안제4조제1항 제3호, 제4호)

- 개정안은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이라는 표현을 '시·자치구간 협력'으로 개정하고, '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 사업의 본래의 취지와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비의 배분 등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대상사업) ① 시장이 자치구에 인센티브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인센티브사업 예산의 지원 없이는 자치구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4.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의 제고가 예상되는 사업 5. (생략) 	<p>제1조(목적) ----- -----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공동협력 사업비의 배분 등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자치구간 협력과 적극적인 -----</p> <p>제4조(대상사업) ① 시장이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 예산을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공동협력사업 예산의 지원 없이는 자치구에서 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4. 시·자치구간 협력을 통한 성과의 제고가 예상되는 사업 5. (현행과 같음)

- 다만, 표면적인 사업명 개정과 용어 순화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동 사업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평가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세부 결과 공개 등 집행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 문화일보(2014.9.5.)서울시 80억 내건 13개 인센티브 사업... 구청 “자치구 길들이기” 불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및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내용 중 “인센티브”를 “공동협력”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공동협력 사업비의 배분 등 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구간 협력과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협력사업 예산의 지원 없이는 자치구에서 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4. 자치구간 협력을 통한 성과의 제고가 예상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비의 배분 등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1. “인센티브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 등에 대한 자치구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인센티브사업 평가”란 인센티브사업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센티브사업비”란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정정보전금 등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인센티브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대상사업) ① 시장이 자치구에 인센티브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제1조(목적) ----- -----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공동협력 사업비의 배분 등 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자치구간 협력과 적극적인 ----- -----.</p> <p>제2조(정의) 1. “공동협력사업”이란 ----- ----- ----- ----- ----- 2. “공동협력사업 평가”란 공동협력사업 ----- ----- ----- 3. “공동협력사업비”란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 ----- -----.</p> <p>제3조(적용범위) 공동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 ----- -----.</p> <p>제4조(대상사업) ① 시장이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 예산을 ----- ----- .</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생략)</p> <p>3. <u>인센티브</u>사업 예산의 지원 없이는 자치구에서 <u>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으로</u> 우려되는 사업</p> <p>4. 자치구간 <u>선의의 경쟁</u>을 통한 성과의 제고가 예상되는 사업</p> <p>5.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액은 <u>인센티브</u>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p> <p>① 시장은 자치구 <u>인센티브</u>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u>인센티브</u>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u>인센티브</u>사업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6조(<u>인센티브</u>사업심의위원회)</p> <p>① 시장은 <u>인센티브</u>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인센티브</u>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생략)</p> <p>2. <u>인센티브</u>사업의 선정</p> <p>3. (생략)</p> <p>4. (생략)</p> <p>5. 그 밖에 <u>인센티브</u>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u>공동협력</u>사업 예산의 지원 없이는 자치구에서 <u>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u> 우려되는 사업</p> <p>4. <u>시·자치구간 협력</u>을 통한 성과의 제고가 예상되는 사업</p> <p>5. (현행과 같음)</p> <p>② ----- <u>공동협력</u>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에 -----.</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p> <p>① 시장은 자치구 <u>공동협력</u>사업의 성과를 ----- 자치구 <u>공동협력</u>사업 시행계획(이하 ----- -----.</p> <p>② ----- ----- <u>공동협력</u>사업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u>공동협력</u>사업심의위원회)</p> <p>① 시장은 <u>공동협력</u>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 서울특별시 <u>공동협력</u>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공동협력</u>사업의 선정</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u>공동협력</u>사업의 효과를 ----- -----</p>

현행	개정안
<p>제7조(사업의 선정·평가 등)</p> <p>① 위원회는 인센티브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도와 난이도, 형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인센티브 사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인센티브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인센티브 사업별 지원금액은 해당 사업의 중요도와 최근 3년간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제7조(사업의 선정·평가 등)</p> <p>① 위원회는 공동협력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 -----.</p> <p>② 제1항의 공동협력 사업을 선정하기에 -----.</p> <p>③ 위원회는 공동협력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p> <p>④ 공동협력 사업별 지원금액은 해당 사업의 ----- -----.</p>
<p>제8조(인센티브 사업비의 교부)</p> <p>① 시장은 자치구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사업 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즉시 차등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되는 인센티브 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p> <p>③ 자치구는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인센티브 사업비를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하여야 한다.</p>	<p>제8조(공동협력 사업비의 교부)</p> <p>① 시장은 자치구에 공동협력 사업비를----- ----- -----.</p> <p>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되는 공동협력 사업비는 「서울특별시----- ----- -----.</p> <p>③ -----공동협력 사업비를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 -----.</p>
<p>제9조(시행규칙)</p> <p>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시행규칙)</p> <p>(현행과 같음)</p>